

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3132호
- 나. 발 의 자 : 오한아 의원(찬성자 11명)
- 다. 발의일자 : 2022년 3월 10일
- 라. 회부일자 : 2022년 3월 16일

2. 제안이유

- 시민참여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 누구나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문화예술의 향유 기회 확대와 이를 장려하기 위한 노력을 시장의 책무에 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생활문화예술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(안 제2조).
- 나. 시장의 시민 생활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활동 장려 노력에 대한 의무를 규정함(안 제4조).
- 다.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지원단에 단장과 직원을 두는 규정을 삭제함(안 제7조).

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주우철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시민 누구나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문화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, 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를 강화시키고자 제출되었음.

나. 개정의 필요성

- 정부는 2014년 「문화기본법」과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정으로 생활문화 정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하였고, 이에 생활문화센터 조성, 생활문화 동아리 지원사업 등 생활문화 관련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.
- 서울시는 ‘2021년 생활문화 활성화 기본계획(문화정책과-9477)’을 수립하고 기존처럼 동아리 및 장르 지원 중심의 사업구조로는 생활문화 확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민 주체형 생활문화축제를 추진하는 등 참여방식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기존 전문예술가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전문·비전문의 구분 없이 소규모 문화공동체나 지역문화 사랑방과 같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독려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.

다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2조는 ‘생활문화’에 대한 용어를 명문화하는 것으로 이는 「지역문화진흥법」에서 정의된 용어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상위법규와의 해석상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음.

- 안 제4조는 시민이 생활문화의 향유 기회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.
 - 이는 기존 동아리·장르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‘일반 시민’으로의 대상을 확대하고 참여방식이 다양해지는 서울시 정책을 고려할 때, 생활문화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문화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.

- 안 제7조는 “지원단 설치·운영”에 관한 사항으로 생활문화지원단을 서울문화재단이 추진하도록 마련된 근거를 삭제하고 ‘지원단에 단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’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임.

- 이는 동 조례안 제정 당시(2016.12월) ‘서울문화재단 내 별도의 추진단 구성으로 운영하기보다 기존 조직을 활용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’이라는 의견을 개진¹⁾하였으나 서울시가 ‘생활문화’를 시장역점 사업으로 추진체를 집약하여 서울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조례상에 반영되었던 것임.

1) 제271회 정례회,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, 2016.12.

- 그러나 서울문화재단은 조례안이 공포(2017.1.5.)되기 이전에 이사회를 통해 ‘생활문화지원단’을 미리 신설하여(2016.12.8.) 행정절차를 위반하였고, 불과 2년만에 ‘지역문화본부’ 내 ‘생활문화팀’으로 조직이 통합(2018.12.26.)되는 등 비효율적 조직운영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.
- 따라서 생활문화의 특성상 다양하고 자율적인 추진 주체가 필요하므로 ‘문화재단’으로 지원단을 둘 수 있는 규정은 추진 주체의 다양성에 반하고 제한적이라 판단되어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.

의안번호
3132

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	제 안 자	제안일자	소관 상임위		
	오한아 의원	2022.3.10.	문화체육관광위원회		
주요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생활문화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(안 제2조) ○ 시장의 시민 생활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활동 장려 노력에 대한 의무를 규정함(안 제4조) ○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지원단에 단장과 직원을 두는 규정을 삭제함(안 제7조) 				
추진경과	○ '22.3. :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(오한아 의원 대표발의)				
부 서 검토의견	원안가결(○) / 수정가결 () / 부결() / 보류()				
쟁점사항 (의회동향, 문제점 등)	○ 쟁점사항 없음				
대응방안	○ 해당사항 없음				
상 임 위 처리결과	○				
향후계획	○ ○				
담당부서	문화정책과	팀장	김수현(☎2133-2540)	담당	주호근(☎2133-2543)